

2002년 전자산업

통상환경 전망(I)

- 본회 국제통상팀 -

- I WTO 뉴라운드
- II 한·일 FTA 관련 검토
- III 한·미 FTA 관련 검토

I. WTO 뉴라운드

1. WTO 뉴라운드 출범의 경위

뉴라운드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는 1998년 5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2차 각료회의에서 폭넓은 분야에서 무역자유화를 위한 뉴라운드협상을 준비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시작된바 있다.

1999년 12월 시애틀에서 개최된 WTO 각료회의에서는 협상의제에 대한 합의도출 실패와 개도국들의 반대에 따라 뉴라운드 출범이 무산되었다.

시애틀에서의 실패 이후 세계 각국은 주요국간 다자간 협의를 활발하게 벌이고, 뉴라운드를 지지하는 공동발표문을 속속 채택함으로써 뉴라운드 출범의 분위기가 무르익게 되었다.

뉴라운드의 출범과 관련하여 중요한 변화는 2001년 6월 14일 스웨덴의 예테보리에서 개최된 미국-EU 정상회의에서 감지되었다.

뉴라운드 출범을 위한 WTO 논의는 금년 들어와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는데, Harbinson 일반이사회 의장은 4월 20일 Checklist를 제안한 바 있으며, 각료선언문의 초안도 점검표를 중심으로 마련되었다.

각료선언문 2차 초안은 많은 회원국들이 모든 문안에 대해 흡족해 하지는 않았지만 각국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각료회의선언문의 초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회원국간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분야는 도하 각료회의에서 분야별 회의를 통해 이견을 조정하였다.

2. 뉴라운드 아젠다의 의의

|| WTO 및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신뢰 회복 ||

세계무역의 중심축을 자임하는 WTO로서는 통상마찰의 심화와 지역주의의 확산이라고 하는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여 신뢰성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 명실상부한 세계무역의 중심축 확인 ||

특히 금번 각료회의에서는 중국과 대만이 가입함으로써 WTO회원국은 144개국이 되어 WTO는 명실상부한 세계무역체제의 중심축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현재 WTO가입을 준비중인 국가는 러시아 등 28개국에 달하고 있는데, 이들 국가들까지 가입하게

되면, WTO는 범세계적 성격(universal nature)을 지니게 된다.

도하각료회의가 뉴라운드("Doha Development Agenda"로 표현)출범을 공식선언함에 따라 앞으로 세계각국은 2005년 1월 1일까지 3년의 기간동안 최종협상을 타결시키기 위한 본격적인 협상국면에 돌입하게 되었다.

|| 무역자유화의 확대/세계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한 모멘텀을 제공하는 계기 ||

우리의 주요 수출시장이 동반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일본은 공식적인 recession (2분기 이상 마이너스 성장)에 돌입),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자유무역체제가 세계 경제의 유일한 대안임을 재확인하였다.

|| 협상에 의한 무역규범의 지속적 발전 ||

WTO 체제 출범이후, 무역규범의 해석과 발전이 분쟁해결 절차에만 의존하여 신축성이 없이 지나치게 사법화 되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으나, WTO 회원국간 협상에 의해서 규범을 발전시키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협상 의제가 계속 확대되는 추세인 바, 무역과 연

계된 새로운 분야들에 대해서도 새로운 규범을 제정할 예정(투자, 경영정책, 정부조달투명성, 환경 등)이다.

|| 개도국의 영향력 강화 ||

이행문제 등 개도국의 관심사항을 다루는 별도의 의제가 마련되었으며, 각료선언문 다수 조항에 개도국에 대한 특별고려가 언급되었다.

3. 각료선언문의 주요내용

각료선언문은 서문에서 뉴라운드의 혜택을 개도국과 최빈국이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무역자유화에 있어 지역무역협정보다는 세계무역규범형성 및 자유화를 위한 유일한 포럼으로서의 WTO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농업, 서비스 등 기설정외제는 현재 WTO에서 각국의 제안서를 바탕으로 1단계작업을 마무리하고 2단계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향후 협상의 원칙과 양허안 제출시한을 명시하였다. 비농산품(공산품) 시장접근에 있어서는 향후협상의 원칙과 방향을 명시하였다.

〈표 1〉 뉴라운드의 협상의제

의 제	양허안 제출 및 특기사항
농업, 서비스 분쟁해결양해 비농산물 시장접근 TRIPS	5차각료회의(농업), 2003년 3월(서비스) 2003년 5월(개선 및 명료화)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 이익 고려 TRIPS와 공중보건은 특별선언문 채택
WTO규범(반덤핑, 보조금, 지역협정), 환경(무역장벽감축, MEA·WTO정보교환)	규정을 명확화하고 개선 무역과 환경의 상호보완성 제고
무역원활화, 정부조달 투명성, 투자, 경쟁정책	5차 각료회의 이후 협상 개시
전자상거래 환경(CTE외제), 무역·부채·금융 소규모경제 등 개도국 관련사항	5차 각료회의 보고서사항 검토 작업대상

WTO규범의 개정과 관련하여 반덤핑, 보조금협정의 규율을 명확히하고 개선하는 협상을 벌이되 협정의 기본개념, 원칙, 유효성, 목적, 수단절차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또한, 첫번째 단계에서는 무역왜곡적 관행을 포함하여 각국이 명확화 또는 개선을 희망하는 조항을 제시토록 하였다.

한편, 1996년 싱가포르 각료회의에서 작업계획이 마련된 투자, 경쟁, 정부조달투명성, 무역원활화 등의 이슈와 환경 및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도 합의를 도출하였다.

투자, 경쟁, 정부조달투명성, 무역원활화 이슈는 5차 각료회의에서 결정되는 협상방식에 따라 5차 각료회의 이후 협상을 개시하도록 하였다.

환경과 관련하여, 각료선언문은 (1)WTO기존규범과 MEA 무역관련 의무와의 관계, (2)MEA 사무국들과 WTO위원회간 정기적 정보 교환 및 업저버 자격절차, (3)환경관련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장벽 또는 철폐 등에 대한 협상을 개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와 별도로 CTE(환경무역위원회) 및 일반이사회에서 지금까지 진행한 모든 작업은 계속하여 제5차 각료회의에 협상필요성을 포함한 권고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전자상거래 이슈와 관련하여, 각료선언문은 일반이사회 및 다른 기구에서 행해진 작업계획을 계속하여 제5차 각료회의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제5차 각료회의까지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관세부과 유예관행을 연장토록 하였다.

4. 우리측 관점에서의 평가

|| 우리 경제의 대외 의존도를 감안할 때, 다자무역협상의 출범은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 긍정적인 요소 ||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로서는 뉴라운드 출범을 통해 세계 무역환경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주요국의 수입장벽을 낮출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게 되어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최근 양자차원에서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지역협정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뉴라운드의 출범은 무역환경개선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일본-싱가포르간 FTA 타결로 인해 우리나라만이 유일하게 지역협정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이다.

|| 우리가 주장해 온 바와 같이 폭 넓은 협상의제를 채택 ||

시장접근 요소뿐 아니라, 규범강화 부분이 다수 포함되었다.

반덤핑, 투자, 무역원활화, 정부조달투명성 관련 규범 제정 또는 강화는 우리 상품의 해외시장 접근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 경쟁, 정부조달의 투명성, 무역원활화 등 싱가포르 이슈는 제5차 각료회의에서 결정되는 협상방식에 따라 제5차 각료회의 이후 협상을 개시하도록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선진국과 개도국간 서로 명분을 살리는 타협이다.

|| 반덤핑 협정 개정건의 협상의제에 포함된 것은 최대 수확 ||

WTO 체제 출범이후, 중국에 이어 가장 큰 피해자였음을 감안할 때, 우리 상품의 해외시장 접근에 유리한 요소이다. 일부 조건이 선언문에 부과된 것은 미국의 국내적 민감성을 감안 할 불가피한 조치이나, 협상 범위와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가 이번 각료회의에서 우선순위를 부여 하였던 반덤핑 문제가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협상의제로 채택되어 향후 자의적 발동 및 남용여지를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미국의 문안수정요구로 instruments라는 표현이

삽입되었으나, 이는 반덤핑 논의를 반대하는 미국 내의 반발 분위기를 고려한 것으로 향후 협상범위를 제한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투자관련 다자규범의 제정 가능성 마련 ||

안정적인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진출 기반을 조성한다.

싱가폴 의제의 협상 개시 시점이 제5차 각료회의 이후로 미루어졌으나, 모든 분야의 협상 결과를 같이 채택하는 일괄타결 방식(single undertaking)의 일부로 처리될 예정이므로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향후 협상 전망

|| 2002.1.28 개최 무역협상위원회(TNC) 제1차 회의에서 향후 협상계획 및 기구 등을 결정할 예정 ||

도하각료회의에서 뉴라운드 출범을 공식 선언하였으나, 이는 협상의 시작에 불과하고 앞으로 양허안을 확정짓는 본격적인 협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 각료회의 합의사항에 따르면 DDA 협상을 3년내에 종결하도록 되어 있는 바, 주요국들은 중 협상 시간을 준수하려는 의지가 확고 ||

도하각료선언문은 전체협상의 시한(2005년 1월 1일)을 3년 정도로 정하고 있어, UR(당초에 4년의 시한 부여)보다 단기간 내에 협상을 종결시킬 계획이다.

이러한 전체협상의 시한과 별도로 농업협상(세부 원칙의 수립시한: 2003년 3월 31일, 양허안 제출시한: 제5차 각료회의), 서비스협상(양허안 포함사항 요청: 2002년 6월 30일, 양허안 제출: 2003년 3월 31일), 이행문제(협상대상 이외의 분야의 검토결과 보고 시한: 2002년말), 분쟁해결양해 개정(개정안 도출 시한: 2003년 5월 이전) 등 상세한 시한을 설정

하여 신속한 협상 종결을 지향하고 있다.

|| 기존협정을 보완하는 정도에 그칠 가능성도 있음 ||

반덤핑, TRIPS 분야 등은 기본적으로 협상의 기본개념과 원칙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다시 말해 규정의 명료화와 지리적 표시의 확대 등을 통해 기존 협정을 보완하는 정도에 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부조달의 투명성, 무역원활화이슈는 협상을 벌이겠지만 개도국들의 관련 제도가 미비하고 통관자동화를 위한 인프라 등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자규범이 마련되더라도 비구속적인 형태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이들 2개의 이슈와 아울러 개도국의 반발이 심했던 투자, 경쟁들의 이슈는 제5차 각료회의 이후 협상을 개시하도록 일종의 타협안이 채택되었으나 이는 논란을 해결한 것이 아니라 봉합한 것이기 때문에, 향후 개도국에 대한 기술지원 등 이행문제와 연계하여 최종 합의될 가능성이 있다.

|| 협상 종료 시점이 2004년까지이나 연기될 가능성도 있음 ||

협상의 종료시점은 2005년 1월 1일로 정해지고, 제5차 각료회의에서 협상 진전상황을 중간점검하기로 하였으나, 협상타결시점은 WTO 회원국간의 첨예한 이해대립에 따라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UR협상도 출범당시에는 4년의 기간 내에 종료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7년의 기간이 소요된 바 있다.

|| 정보기술(IT) 협정의 향후 전망 ||

UR이 종료된 후 1996년 싱가포르 각료회의를 앞두고 정보기술 상품에 대한 무관세 양허협상이 진행되고, 1997년 4월에는 세계 IT제품 무역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들이 협상결과에 따라 무세화가

단행되었다.

- 주요 대상품목(6개군) : 컴퓨터, 통신장비, 반도체, 반도체 제조 및 시험장비, 소프트웨어 및 과학장비
- 무세화 대상품목에는 국가별로 차이가 없으나, 일부국가(한국 포함)에 대해서는 이행기간을 약간 연장(일반적으로는 2000.1.1부터 해당품목 관세 완전 폐지)

1998년 이후 WTO에서는 정보기술협정의 대상품목 확대를 위한 시도(ITA-II)가 있었으나, 현재까지 뚜렷한 진전은 없다. 뉴라운드가 진행되는 동안 기본 IT 협정의 확대를 위한 시도가 예상된다.

||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세부과 문제 ||

도하 각료선언(제34항)은 전자상거래에 대한 일반이사회의 작업 계속을 지시하면서, 전자상거래에 대한 무관세 관행을 차기 각료 회의까지 연장한다.

현재 아국은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는 법률적, 기술적으로 관세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급속한 기술발달을 감안할 때 전자상거래에 대한 항구적인 무관세를 수용하기는 곤란하다.

향후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세부과를 위한 법률적, 기술적 문제를 적극검토 중이다.

6. 향후 대처방안

|| 업종단체, 업계, 학계, 정부가 함께 참여하여 산업별/업종별 협상 대책수립 ||

뉴라운드 협상이 빠르면 3년 이내에 타결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로서는 국제산업의 구조조정 방안 및 협상전략을 서둘러 수립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OECD 가입 및 IMF 위기 이후 구조조정을 통해 국내 경제의 개혁 및 개방을 빠르게

추진한 바 있으므로 추가개방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을것으로 보인다.

|| 다자간 협상은 입장을 같이하는 국가들과의 공조가 긴요한바, 분야별 Friends Group 활동에 적극 참가 ||

비농산품(공산품) 시장접근협상은 우리 경제가 뉴라운드에서 큰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분야이므로 국별·품목별 경쟁력을 분석하여 향후 협상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우리로서는 관세협상이 공식인하방식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되, 부문별 무세화협상 및 request / offer협상에도 미리 대비해야 할 것이다.

|| 주요국과의 협의 채널 확보 ||

주요 무역국인 Quad 국가(미국, EC, 일본, 캐나다)들과의 정규대화 채널을 유지하고, 금번 각료회의에서 신규 가입한 중국과의 대화 채널도 확보한다.

향후 중국의 WTO내 좌표 설정에 예의 주시해야 한다.

|| 규범, TRIPS, 상거래이슈의 협상대책 ||

규범분야에서 다루어질 주요 이슈로서 반덤핑, 보조금 및 상계관세, 지역무역협정이 있으며, 지적재산권의 경우 지리적 표시에 대한 통보 및 등록을 위한 다자체제 설립을 위한 협상을 마무리 하게 된다.

이들 분야를 경중과 완급별로 구분해 본다면, 반덤핑규범의 개정문제가 우리 경제에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반덤핑은 수출길을 원칙적으로 봉쇄함으로써 기업의 사활과 관련될 수 있는 이슈이며, 중국이 2001년 WTO가입 이후에 적극적인 외국 시장진출전략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반덤핑분야에서의 통상마찰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II. 韓·日 FTA 관련 검토

1. 자유무역협정 (FTA, Free Trade Agreement)의 개념

2국간 혹은 지역 내에서 물건이나 서비스무역을 자유화함으로써 경제를 통합한다는 협정이다. 2국간 및 지역 내에서 관세 등 무역장벽의 철폐를 주 내용으로 하며 경제적으로는 각국·지역이 각각 가진 있는 분야를 특화 하여 경제력을 효율화 할 수 있다.

예) NAFTA, 미국·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 등

2. 한·일 FTA 논의의 경과

지난 98년과 99년 양국 정상이 경제 협력을 보다 긴밀하게 추진하기로 합의해서 선언한 정신에 따라 한일 FTA가 검토되기 시작되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일본의 JETRO 산하 아시아경제연구소가 1년여에 걸쳐 연구하였고, 2000년 5월과 9월에 서울과 동경에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외 한일제계회의, 한일 FTA 비즈니스 포럼 등이 개최되어 논의중이다.

※한일양국은 지금까지 어떤 국가와도 자유무역협정을 맺고있지 않지만, 최근 일본은 한국 외에 싱가포르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2000년 3월부터 산업계, 경제계, 학계와 공동연구를 하고 있으며 한국은 현재 칠레와 정부간 교섭중이다.

3. 한·일 FTA 체결에 대한 긍정적 견해

WTO 출범이후 지역주의 발흥 등 세계경제의 질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GATT/WTO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 현황〉

구 분	GATT시대 (1948~89)	UR협상기간 (1990~94)	WTO시대 (1995~99)
통보건수	연평균 1.8	47	85
누 계	77	124	209

※ 자료: WTO 사무국 2001

90년대 이후 미주와 구주에서는 자유무역체결을 바탕으로 지역적인 경제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에 크게 공헌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교역과 투자 유치 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해지고 있어 역내 시장을 키워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경제 규모가 크고, 지리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가까운 한국과 일본이 먼저 FTA를 체결함으로써 아시아의 구심적 역할이 필요하다. 양국이 무역을 자유화하면, 두 시장이 통합되어 양국 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NAFTA 등의 예에서 보듯이, 투자도 증가하고 고용 창출도 기대된다.

기업간 투자 및 기술교류가 활성화 및 수평분업화 되었다. 대외 통상교섭에 있어서도 협상력이 강화되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2.8% 추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일FTA의 경제적 효과 예측〉

비 고	대외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일본아시아연구소
실질GDP(%)	-0.07	-0.07	-
후생증가(%)	-0.19	0.48	-
수 출(%)	2.32	0.43	2.80
수 입(%)	3.40	1.00	2.47
무역수지(억\$)	-15.4	-5.9	2.9
對 일본	-60.9	-33.6	-38.8
對 제3국	45.6	27.7	41.7

※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한일FTA의 경제적 효과와 바람직한 정책방향
산업연구원. 2000. 한일FTA의 산업별 영향과 대응전략 *アジア經濟研究所*.
2000. Toward Closer Japan-Korea
Economic Relations in the 21st Century.

못하다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장기적으로는 한일중 동북아시아 공동체가 바람직 하지만 중국은 아직 그 시기가 무르익지 않았다.
장기적인 지향 방향으로 FTA는 바람직하지만 극복 할 만한 문제도 많다.

4. 한·일 FTA에 대한 부정적 견해

>>> 일본

한국의 실질 GDP 성장을 연평균 0.07% 감소시키며 무역수지도 33~61억\$ 규모로 적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對일본 관세율이 7.9%인 반면 일본의 對한국 관세율은 2.9%에 불과해 관세철폐에 따라 대일 무역적자가 심화될 전망이다.

일본의 비관세 장벽이나 특유의 상관습 때문에 한국 상품의 일본 시장 진입이 여전히 어려울 것이며, 경제 규모 면에서 일본의 1/10에 불과한 한국은 경제적으로 일본에 예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관세철폐 효과는 한국 측이 생각하는 것만큼 즉시 나타나지 않으며, 과도기간이 경과한 후에 나타나겠지만, 민간기업의 투자환경변화를 예측한 움직임과 정책 효과 등 투자증가를 위한 효과가 먼저 나타날 것이다.

한일은 제도이상으로, 의식면에서 사실상 서로가 잘 알고 있다. 남북통일이 이루어진 후 경제적인 효과와 미국에 대한 코미트먼트를 확보하기 위해 한일FTA는 필요하다고 본다.

FTA 추진에는 어려움이 따르지만 단념하지 말고 지속해야한다. 양국간 무역적자 논의에 구속되어서는 안 된다

- ※ 일본이 예시한 한국측 우려사항
- 한일간 결합적 산업구조
- 일본 시장의 폐쇄성
- 일본기업의 높은 경쟁력
- 대일무역적자 증가

6. 한·일 FTA 체결의 핵심과제

FTA를 추진할 때 한 국가가 불리하다면 그 FTA는 성립될 수가 없다. 한국의 무역적자가 확대된다면 일본으로부터의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를 활성화하는 시장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국제수지를 개선하는 동시에 양국공동의 산업구조조정이 달성될 수 있다.

이처럼 어떻게 한일간에 비교우위에 입각한 경쟁과 협력을 동시에 이끌어 낼 수 있는가하는 것이 한일 FTA의 핵심과제이다.

산업·기술 협력 강화, 양국간의 경쟁적 비교우위 분야에서 전략적 제휴, 과잉투자조정, 기술제휴 및 이전촉진, 중소기업협력, 공정분업 및 상품차별화

5. 한·일 FTA 체결에 대한 양국의 입장

>>> 한국

세계적인 추세를 볼 때 한일은 필연적으로 FTA를 추진해야 하겠지만, 무역 흑자가 급격히 축소되고 구조적인 적자가 다시 한번 재현되고 있는 한국의 현 상태에서는 어렵다. 일본의 비관세·비제도 장벽도 우려 할 만하다.

장기적으로 한일간 FTA는 필요하겠지만, 일본 기업은 폐쇄적이며 기술이전, 투자에 적극적이지

등 다양한 협력체제를 구축해야한다. 또한, 일본의 對韓 투자를 확대하고, 경쟁정책의 조화 및 적용을 강화한다.

7. 한·일 FTA 체결에 대한 전자업계 의견

FTA가 체결되면 관세가 낮고 기술이 앞선 일본이 유리하다. (일본이 먼저 FTA를 제안한 것은 이런 측면에서 고려) 대일무역의 적자 심화가 우려돼 단기적으로 부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철폐로 수입가격이 내려갈 경우 현재의 취약

한 산업구조에서 관련산업 전체가 타격을 받게 될 것이며 경제침체과정에 있는 일본에게 승통을 제공할 이유가 없다.

한일 FTA는 다년간 시간이 걸리는 문제고 현재의 논의는 그 준비를 위한 첫걸음이다.

협정의 일정과 내용이 협상과정에서 정해지므로 협상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바람직한 FTA 협정체결 대상국으로는 미국 36.8%, 중국 29.3%, 동남아 12.6%, 일본 8.0%, 중남미 6.9%, 유럽연합(EU) 5.7% 등의 순위(2001. 7 전 경련 조사)이다.

〈전자산업 對일수출입/수지 및 주요 수출입품목 현황〉

■ 전자산업 對日 수출

(단위: 천불, %)

수출	99	증가율	2000	증가율	2001.10누계	증가율
전체	15,862,448	29.6	20,466,016	29.0	14,042,276	- 16.3
산업용	1,656,357	358.0	2,811,947	69.8	1,880,884	- 18.3
가정용	691,757	22.9	774,593	12.0	549,375	- 12.3
전자부품	2,893,882	30.5	3,762,928	30.0	2,209,653	- 28.6
일반부품	1,016,733	66.4	592,718	- 41.7	460,370	- 0.3
반도체	1,877,149	16.9	3,170,210	68.9	1,749,283	- 33.6
소계	3,364,847	119.1	4,179,258	24.2	2,890,629	- 14.8
전자산업계	5,241,996	66.8	7,349,468	40.2	4,639,912	- 23.0

■ 전자산업 對日 수입

(단위: 천불, %)

수입	99	증가율	2000	증가율	2001.10누계	증가율
전체	24,141,990	43.4	31,827,943	31.8	22,341,323	- 15.9
산업용	2,045,433	77.1	3,114,415	52.3	2,296,548	- 11.2
가정용	463,008	51.5	683,599	47.6	500,160	- 9.6
전자부품	6,195,153	44.4	7,402,709	19.5	4,794,266	- 21.7
일반부품	2,648,557	49.5	3,016,765	13.9	1,692,780	- 32.6
반도체	3,546,596	40.8	4,385,944	23.7	3,101,486	- 14.1
소계	5,156,998	59.5	6,814,779	32.1	4,489,488	- 20.5
전자산업계	8,703,594	51.4	11,200,723	28.7	7,590,974	- 18.0

2002년 전자산업 통상 환경 전망

■ 전자산업 對日 무역 수치

(단위: 천불, %)

수 지	99	2000	2001. 10 누계
전 체	- 8,279,542	- 11,361,927	- 8,299,047
산업용	- 389,076	- 302,468	- 415,664
가정용	228,749	90,994	49,215
전자부품	- 3,301,271	- 3,639,781	- 2,584,613
일반부품	- 1,631,824	- 2,424,047	- 1,232,410
반도체	- 1,669,447	- 1,215,734	- 1,352,203
소계	- 1,792,151	- 2,635,521	- 1,598,859
전자산업계	- 3,461,598	- 3,851,255	- 2,951,062

〈對日 상위 20대 수출품목〉

(단위: 천불, %)

순위	코 드	품 목 명	2000		2001(1월~10월)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1	721110	디지털식집적회로	2,832,214	72.2	1,522,267	-35.5
2	714270	데이터디스플레이장치	410,071	60.5	435,012	26.4
3	714290	컴퓨터 부분품	992,322	147.1	408,761	-50.9
4	714110	소형 및 개인용컴퓨터	686,384	28.9	386,608	-30.6
5	711390	기타 반송통신기기	8,519	347.5	166,302	2266.4
6	712320	정지화상비디오카메라	239,266	51.0	151,942	-20.9
7	732900	기타의 음향기기 부분품	300,750	44.8	125,337	-51.4
8	725220	비디오테이프	83,458	20.2	65,762	-1.0
9	723910	고정식축전기	52,377	158.4	57,165	59.7
10	714230	기타의 보조기억장치	84,459	250.7	56,787	-18.7
11	732330	카세트	40,499	-42.1	56,090	97.2
12	724300	PCB	83,326	23.2	52,849	-21.7
13	721210	1W미만의 트랜지스터	86,479	41.3	52,638	-28.0
14	731900	VTR	58,618	25.3	51,209	38.7
15	732200	라디오카세트	45,425	161.2	46,991	25.2
16	733120	세탁기	34,566	19.4	38,640	39.2
17	731100	칼라TV	46,660	-52.2	38,302	5.4
18	721410	감광성반도체	46,180	4.2	37,165	-3.8
19	725610	축전기	49,391	16.1	34,598	-9.2
20	721120	디지털식이외의 집적회로	51,840	48.1	34,499	-18.1

통상

〈對日 상위 20대 수입품목〉

(단위: 천불, %)

순위	코드	품목명	관세율 (한국)	2000		2001(1월~10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721110	디지털식 집적회로	8%	2,570,016	20.8	2,074,921	-0.7
2	712990	기타 무선통신기기 부분품	8%	559,016	24.7	381,773	-14.8
3	724300	PCB	8%	457,253	18.9	291,895	-19.9
4	714290	컴퓨터부분품	8%	417,643	209.2	283,110	-17.8
5	725610	축전지	8%	437,059	-4.1	259,203	-29.3
6	721490	기타의 반도체 디바이스	8%	407,010	23.9	219,019	-35.3
7	723910	고정식축전기	8%	355,737	41.8	216,593	-27.1
8	721600	실리콘웨이퍼	8%	275,429	37.7	191,944	-16.7
9	732900	기타의 음향기기 부분품	8%	286,809	31.3	164,473	-32.4
10	724200	커패타	8%	210,058	5.5	135,238	-23.1
11	734130	방전등	8%	93,204	140.5	134,142	86.4
12	712320	정지화상비디오카메라	8%	110,446	225.7	128,595	42.0
13	721410	감광성 반도체	8%	193,466	32.0	125,111	-22.4
14	713200	경보신호기기 및 부분품	8%	116,937	447.1	119,150	23.2
15	714270	데이터디스플레이장치	8%	91,993	35.2	99,751	13.1
16	721300	DIODE	8%	177,987	14.8	93,738	-37.8
17	712390	수상기	8%	74,977	102.2	90,112	50.2
18	721120	디지털이외의 집적회로	8%	165,826	93.3	85,176	-39.0
19	722930	새도우마스크	8%	177,610	-0.9	84,248	-46.0
20	724490	라디오용 튜너	8%	98,442	359.6	79,062	1.8